표준약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현 행	개 정(안)
제6조((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 ⑤ (생 략)	제6조((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① ----------. 1. ---------- 2. ---------- 3. ---------- 4. ----------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 ② ~ ⑤ (현행과 같음)